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20. 5. 25.(월) 14:0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8	차미희*, 박인휘**, 박영미, 유제욱, 오희아, 김우정, 남상택, 이정화	신태섭(간사)
불참인원	4	정혜중, 정연화, 장남수, 송희준	

* 의장 **부의장

4. 안건

-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 관련 오희아 평의원 요구안

5. 개회선언

- 가. 의장은 정혜중, 정연화, 장남수, 송희준 평의원이 불참하였음을 알리고, 간사는 과반 출석으로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다.
- 나.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 다.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전 회의록을 배부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 심의 및 논의

가. 심의사항

제1호의안: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이번 학칙 개정안은 ①집중이수 수업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②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임을 안내하다. 학사

제도 유연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중 2단계 무크선도대학에 지원하려면 집중이수 수업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교 학칙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11조 4항을 신설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이어 재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취득 기준학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최대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칙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를 개정하는 내용임을 알리다.

- (3) 박인휘 평의원은 집중이수제와 관련하여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 및 지침 등이 제시되었는지를 질의하다.
- (4) 간사는 집중이수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학칙에 명시되고, 세부적인 운영 관련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답하다.
- (5) 박인휘 평의원은 추가 3학점 취득과 관련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는지 문의하고, 학생들이 혜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학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으로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것인지 예측 가능 여부를 질의하다.
- (6) 기획팀장은 학칙이 시행되면 7월에 안내하여 2020-2학기 수강신청 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교무처 수업지원팀에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교과목 분반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할 계획이며, 개설 교과목 신청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7) 의장은 기존 21학점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은 재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한 추가 3학점을 더하여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가능하다고 답하다.
- (8) 오희아 평의원은 이번 학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학생 의견을 수렴했는지 문의하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한 계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다.
- (9) 기획팀장은 학교 정책제안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3학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고 말하다. 이어 집중이수제 근거 규정은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상위법에 마련되어 있었고, 본교는 K-MOOC 사업 신청을 위하여 현 시점에서 학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교과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K-MOOC 교과목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이어 해당 학칙은 학부 및 대학원에 통용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각 대학원에서도 집중 수업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
- (10) 유제욱 평의원은 다른 대학은 이미 도입하였는지를 질의하고, 간사는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학칙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답하다.
- (11) 유제욱 평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학칙이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 교수의 필요에 따라, 또는 학생의 요구 및 편익에 따라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행세칙 반영 및 제도 시행 전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의장은 이에 동의를 표하고, 집중이수제 도입 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교수 및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학칙 개정안이 나왔어야 했었다는 의견을 전하다.

- (12) 기획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시 본교는 학칙에 해당 내용을 바로 반영하지 않았고 가능한 15주 이상 수업을 하도록 해왔으나, 일부 전문·특수대학원 교과목 및 프로그램 등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학칙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설명하다. 학부 수업 및 대학원의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무처에서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전달하다.
- (13) 박영미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의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등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다.
- (14) 간사는 규정위원회에서 타대학 규정을 검토한 후 작성된 안이라고 말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인데 학칙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면 오히려 예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다. MOOC 강의 활성화, 미니학위제 도입 등 최근 대학의 추세에 맞춘 유연한 형태의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임을 부연 설명하다.
- (15) 유제욱 평의원은 이수시간과 관계없이 수업일수만 줄어드는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실제적 제도 시행 전 구성원간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다.
- (16) 오희아 평의원은 구성원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동의를 표하고, 최근 전 과목 온라인 강의 실시에 따른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 등은 우려점이 많다고 지적하다.
- (17) 박인휘 평의원은 최근 MOOC에 질 좋은 콘텐츠가 많은 만큼 기존 수업시간과의 충돌 없이 유연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를 위한 근거를 학칙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구성원의 의견 및 우려사항을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시행세칙에 잘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18) 간사는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K-MOOC 사업 지원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본교 학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하다. 이어 각 전문·특수대학원에서도 당장 적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을 해야 할 단계가 되면 교무처에서 의견 수렴 및 정확한 안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다.
- (19) 오희아 평의원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칙을 개정하는 것임은 이해하였으나, 학칙이 개정되면 교수 자율로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세부적 지침 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20) 간사는 현재 학칙이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조항을 학칙으로 반영할 때 통상적으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 세부사항 및 절차는 논의 예정이라고 말하다.
- (21) 의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1) 의장은 제2호의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2) 간사는 각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소속 학생이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 외에 추가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칙 제2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을 설명하다.
- (3) 의장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다음 학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4) 기획팀장은 재난, 재해 등 특별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다음 학기까지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하다.
- (5) 남상택 평의원은 각 전문·특수대학원별로 학기당 취득학점이 정해진 이유가 있는데 추가 학점 취득을 가능하게 할 경우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다.
- (6) 기획팀장은 다음 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이고, 전문·특수대학원은 학기당 취득학점이 6~9학점이며 조기졸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사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다.
- (7) 의장은 일반대학원은 제외된 것인지 질의하다.
- (8) 기획팀장은 일반대학원은 한 학기 12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고, 석사 수료학점은 24학점이므로 추가 3학점을 부여할 만한 필요성이 약하여 제외되었다고 답하다.
- (9) 김우정 평의원은 추가 3학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보충의 차원으로 부여된 것이고,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제도인데 일반대학원만 제외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다.
- (10) 박인휘 평의원은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이 12학점이므로 한 학기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였어도 보완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6~9학점으로 제한이 있는 전문·특수대학원만 추가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 (11) 유제욱 평의원은 개정취지를 보면 교과과정 상의 문제가 아닌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학점 부여이므로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일반대학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대학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 (12) 기획팀장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학점을 한 학기에 이수하게 되면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학기가 발생할 수 있어 교무처에서 이에 따른 교육적 측면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교무처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하다.
- (13) 의장은 재난, 재해 등 특별사유에 의한 추가 3학점 취득이므로 일반대학원도 동일하게 포함시켜야 하고, 수강 여부는 학생이 판단하여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다.
- (14) 김우정 평의원은 학과에서 한 학기 3과목 수강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다른 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여 최대 학점을 채우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하고,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면 부담으로 느끼기 보다는 더 이수하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다.
- (15) 의장은 많은 학생들이 가능한 수료학점을 빨리 이수하고, 논문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일반대학원이 이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다.
- (16) 오희아 평의원은 학부도 정규학기가 8학기이지만 최대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반대학원도 추가 3학점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다.
- (17) 의장은 교무처에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 (18) 유제욱 평의원은 수정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다음 학기에라도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다.
- (19) 김우정 평의원은 이번 연도에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내년에는 졸업 또는 수료할 가능성이 높아 다음 학기에 대학원 학칙이 개정되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전하다.
- (20) 유제욱 평의원은 해당 조항은 꼭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재난, 재해가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한 내용이므로 대학원 학칙에 반드시 반영을 해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가능하면 이번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일반대학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다.
- (21) 의장은 이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다.
- (22) 간사는 해당 안건이 오늘 심의되지 않으면 전문·특수대학원 학생들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일반대학원 적용 요청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교무처에 별도로 전달하는 안을 제안하다.
- (23)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일반대학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무처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발의되어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나. 논의사항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 관련 오희아 평의원 요구안

- (1) 의장은 안건상정요청서 서식에 따라 오희아 평의원이 상정 요청한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 관련 요구안의 6개 주문사항 중 5개 주문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알리다.
- (2) 오희아 평의원은 주문사항 1)2020 상반기 등록금 환원 논의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다.
- (3) 의장은 주문사항 1)은 대학평의원회 구조 개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이어 지난 4월 22일 대학평의원회 회의 전 해당 요구안에 대해 재적 평의원들에게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없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희아 평의원의 요청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의장을 비롯하여 박영미, 정연화, 유제욱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는 등록금 환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기구가 아니며, 예결산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음을 말한다. 이에 안건상정 요청서의 주문사항 1)은 오늘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였다고 설명하다.
- (4) 오희아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별로 등록금 환원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었는데 공유 받을 수 있는 현황이 있는지 묻다.
- (5) 박인휘 평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는지, 현황 등을 질의하다.
- (6) 오희아 평의원은 지난 5월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등록금 환원 관련 요구안을 안건 상정 요청하였으나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들이 참여하여 등록금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구성단위가 모인 대학평의원회에서라도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전하다.
- (7) 의장은 오희아 평의원의 고민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항으로 다룰 수 없기에 안건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하고,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 진행을 제안하다.
- (8) 오희아 평의원은 등록금 환원 문제는 예산 관련 사항이니 기획처에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질의하고, 간사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처장님께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이에 오희아 평의원은 직접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논의를 회피하는 상황이니 다시 한 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다.
- (9) 의장은 주문사항 2)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오희아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수를 16인으로 확대하고 교수 4명, 학생 4명, 직원 4명, 동창 2명, 대학발전 2명으로 확대하자

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2019년 9월 대학 평의원 수를 25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평의원 수를 1/4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도 학생을 포함하는 등 학내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는 만큼 학생평의원 수를 교수평의원 수에 맞춰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어 2018.12.7. 대학평의원회에서 전체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 일부를 늘리는 것으로 논의한바가 있었다고 전하고, 학생평의원이 2명이지만 학부와 대학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구성단위별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부 학생의 대표자는 1명이라고 부연 설명하다.

- (10) 의장은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2018.12.17.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확인 결과 전체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 일부를 늘리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당시 이주희 평의원이 비율은 유지하되 인원을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임을 설명하고, 논의에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 (11) 남상택 평의원은 평의원 수 조정과 관련하여 동창 임원들과 논의 결과 동창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전달하고, 동창이 학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창평의원 수는 확대하지 않고 인원 구성안을 작성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질의하다.
- (12) 오희아 평의원은 구성단위별 인원에 대한 안은 다른 구성단위와 의논한 것은 아니며 유의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말하고, 총장 선거와 관련한 4자 협의체 구성 및 선관위 비율 구성 등을 참고하여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13) 유제욱 평의원은 학생평의원이 직원 노동조합과 별도로 의논하지는 않았으며 총학생회 안을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평의원 수와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직원의 의견임을 전달하다.
- (14) 오희아 평의원은 비율은 유지하되 인원을 확대하는 것 안에 대한 의견을 묻다.
- (15) 유제욱 평의원은 인원만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현재 25명 이상으로 늘리는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전하다.
- (16) 오희아 평의원은 상위법에 최소 인원만 명시되어 있고, 내규는 학교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밝히고, 대학평의원회가 더 민주적이기를 바란다고 전하다.
- (17) 박인휘 평의원은 인원 확대에 대한 요구안은 전체 인원수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2단계로 생각해 봐야 할 안이라고 말한다. 이어 타교 대학평의원회 인원 및 구성 확인 결과 본교보다 규모가 큰 경우는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임을 지적하며, 상위법안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18) 오희아 평의원은 타교 현황과 비교했을 때 본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타교의 인원도 충분하지 않고,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인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자체가 현안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타교 학생들과 대학평의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결과 대학평의원회 심의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인원 구성 비율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 (19) 의장은 대학평의원회 인원수를 확대할 것인지, 확대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각 구성단위별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기존 비율을 변경하게 될 경우 각 구성단위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20) 이정화 평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가결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고, 유제욱 평의원도 표결을 통해 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한다.
- (21) 오히아 평의원은 인원확대 및 비율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구체안을 제안한 만큼 차기 대학평의원회에서 각 구성단위별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한다.
- (22) 의장은 구성단위별 의견을 모아서 토론한 후 의결에 붙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 (23) 의장은 주문사항 3)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오히아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 구성원의 참관 및 발언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참관만 보장하고, 발언을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연세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배석 제도와 같이 자격 및 인원을 제한하고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한다.
- (24) 박영미 평의원은 타당한 명분 및 문제의식의 공유 없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요구가 필요한 것인지를 질의하다. 각 구성단위별 대표가 소속 구성단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회의 후에 참석 평의원이 소속단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한다.
- (25) 오히아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한 명이 참여하는 것과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것에 영향력의 차이가 있고, 2016년 당시 총학생회장 혼자 학생을 대표하여 사안에 대해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사례를 말한다. 이어 평의원이 권한을 이임 받은 대표의 자격이기는 하나 자료를 직접 보고 어떻게 논의하는지 알고 싶다는 구성원에 대해 참관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하고, 가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 (26) 박영미 평의원은 대표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중앙운영위원회 내부의 문제로 보여지며, 대학평의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전한다.
- (27) 오히아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평의원으로써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다.
- (28) 유제욱 평의원은 모든 회의체가 그렇듯이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을 갖고 참석한다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참관이 대표성을 감시하는 기능이 될 수 있고, 민주성의 논리와도 맞지 않으며, 토론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다. 직원의 의견은 참관 허용을 받

대한다는 입장임을 전하고,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회의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관인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29) 오희아 평의원은 권한을 위임하였어도 국회는 참관이 허용된다고 말하고, 대표성이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의하다.
- (30) 김우정 평의원은 오희아 평의원 의견에 동의를 표하다. 이어 본인은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으로서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심의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음을 전하고, 전문·특수 대학원 소속 참관인을 섭외한다면 보완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말하다. 다른 분야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의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므로 참관인 허용에 대해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전하다.
- (31) 박인휘 평의원은 주문사항 3)참관 및 발언 보장과 5)속기록 게시 요구안이 연동되어 있다고 말하고, 현재 회의록이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참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32) 오희아 평의원은 완전히 다른 결은 아니지만 참관 및 발언 허용을 할 경우 회의 자리에서 재심의 될 여지가 있으나 속기록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확인하는 것이므로 다르다는 생각을 전하다.
- (33) 의장은 학생회 내 대학평의원회 개선 요구와 관련한 별도의 팀이 있어 그 팀장의 참관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팀이 있는지 질의하다.
- (34) 오희아 평의원은 작년에 학교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였고, 협의체 팀 중 대학평의원회 관련 논의를 하는 팀이 있었으나 이번 연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곧 구성될 계획이라고 말하다.
- (35) 의장은 그 팀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대해 참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참관하되 발언 허용은 안한다는 입장인지, 또한 발언 허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지를 질의하다.
- (36) 오희아 평의원은 매 회의마다 참관을 요청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발언 허용 여부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참관과 발언 허용을 모두 요청하였지만 논의 결과 우려 지점이 있어 발언 허용은 어렵다고 결정된다면 참관만이라도 허용되기를 바라고, 의장이 허용하는 경우 발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37) 의장은 이전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다.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차기 총학생회장 및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의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는데 상시적 참관 허용을 요청하는 것인지 묻다.
- (38) 이정화 평의원은 예결산 등의 자문 시에는 참관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39) 의장은 작년 회의에서 참관과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 외에 참관 및 발언 허용 요구안에

대한 각 구성단위별 의견을 들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제안하다.

- (40) 박인휘 평의원은 원칙을 정해 시범 운영을 해 본 후 표결하는 안을 제안하다.
- (41) 유제욱 평의원은 모두 내용을 숙지한 상황이고,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표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42) 오희아 평의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우려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표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박인휘 평의원의 제안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가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43) 남상택 평의원은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다.
- (44) 오희아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대표의 자격이라 하더라도 혼자 발언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인원 제한을 두고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 (45) 의장은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참관을 허용하되 발언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발언권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46) 이정화 평의원은 예산안 자문 등의 안건이 있는 회의에는 참관 허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하다.
- (47) 의장은 전문·특수대학원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원생 1명, 학부생 1명 참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48) 김우정 평의원은 전문·특수대학원 대표가 없다고 말하고, 박인휘 평의원은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다.
- (49) 박영미 평의원은 이러한 진행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표로서의 책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학생 평의원은 대표성에 침해를 받고,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관인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다.
- (50) 오희아 평의원은 참관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대표가 전달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학평의원회에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개진되는 구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참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하다.
- (51) 유제욱 평의원은 참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시범 운영 후 결정하자는 안으로 수렴된 만큼 시범 실시 조건에 대해 정하자고 말하다. 이어 참관인 제도가 있어도 발언을 하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원칙에는 맞지 않으며, 회의 안건이 미리 상정되면 각 구성단위별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친 후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다.
- (52) 의장은 ①참관 및 발언 불허, ②참관 시범 운영을 표결에 붙이고, ①번 3명, ②번 5명이

거수하여 ②번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어 세부사항으로 참관 인원수는 현재 각 구성단위 대표 인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참관은 학생 뿐 아니라 각 구성단위 모두가 가능하며, 발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결정하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여 결정하다.

(53) 간사는 참관 사전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질의하고, 박인휘 평의원은 회의 1주일 전까지 참관 신청 명단을 제출할 것을 제안하다.

(54) 의장은 회의 1주일 전까지 참관인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55) 의장은 주문사항 4)회의록 게시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2018년 이전 회의록 열람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56) 오희아 평의원은 2018년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법안에 모든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시작 시점부터의 모든 회의록을 영구적으로 게시하되 2016년과 같이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다.

(57) 이정화 평의원은 영구적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질의하다.

(58) 오희아 평의원은 2018년에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 회의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요구하였다고 말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최근 2회차 회의록만 게시되어 있으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은 삭제 없이 영구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했다고 답하다.

(59) 남상택 평의원은 당시 평의원들의 의사 타진 없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고 말하다.

(60) 의장은 평의원 자격으로 회의록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하여 열람하는 안을 제안하다.

(61) 오희아 평의원은 전 평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지 질의하고, 남상택 평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다.

(62) 오희아 평의원은 회의록을 영구적으로 게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전 평의원들이 게시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줄 경우 게시할 수 없다는 우려를 공감한다고 말하다.

(63) 이정화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하면 대학평의원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참관 및 전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다.

(64) 오희아 평의원은 참관의 경우 참관인 서약 등의 장치를 마련하면 되고, 비밀유지 측면에서 회의록을 비공개하기 원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면 된다는 의견을 전하다. 이 회의 자리에서 결정이 어렵다면 전 평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지 제안하다.

- (65) 박인휘 평의원은 학생회에서 전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 검토하여 전 평의원님들께 연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66) 남상택 평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크게 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다.
- (67) 의장은 법령이 정한대로 2018년부터 회의록을 공개하였고, 전 회의록 확인이 필요하다면 평의원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요청하면 된다고 말한다.
- (68) 오희아 평의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고, 전 평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개진한다.
- (69) 박인휘 평의원은 2013~2017년 당시의 평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한 회의록 확인이 필요할 때 열람을 하자는 것이 대승적 의견임을 전한다.
- (70) 오희아 평의원은 전 회의록을 열람한 후 근거를 마련해 오겠다고 말한다.
- (71) 유제욱 평의원은 과거 비공개였던 회의록에 대해 2018년 법령 개정을 근거로 전 평의원들에게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변호사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획처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어 의장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시 열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 (72) 기획팀장은 2018년 법령이 개정되어 공개 규정이 생겼을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여 2018년 1차 회의록부터 공개 게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록에 명시한 후 공개를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 (73) 박인휘 평의원은 2018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 (74) 오희아 평의원은 해당 기수에 그와 같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기수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전하고, 요구하지 못할 치명적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 (75) 남상택 평의원은 당시 결정한 일을 반복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이 필요하므로 지금 회의에서 바로 전 회의록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전한다.
- (76) 오희아 평의원은 본인이 전 회의록을 열람한 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논의를 해보는 안을 제안하고, 회의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는지 질의하다.
- (77)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은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답하다.
- (78) 박인휘 평의원은 전 평의원에게 과거 비공개였던 회의록에 대해 공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회의록 공개 시기를 반복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기획처에 요청하고, 오희아 평의원에게는 전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한 필연적 이유가 있다면 다음 회의에 근거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79) 의장은 주문사항 5)속기록 작성 및 게시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오희아 평의원은

정제된 언어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어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말한다.

- (80) 의장은 현재 회의록으로도 논의 맥락 파악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드시 속기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81) 오히려 평의원은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록 작성 및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오늘 회의에서 참관 시범 운영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회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추후에 더 논의하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말한다.
- (82) 의장은 해당 안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상정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83) 의장은 주문사항 6)대학평의원회 내규 논의와 관련하여 안건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어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 및 세칙에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전하다.
- (84) 오히려 평의원은 동일회기 동일안건, 참관 허용, 회의록 게시 등 지속적인 요구안이 있었다는 것은 대학평의원회 내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다. 당장 바꾸자는 것이 아닌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을 이번 년도에 논의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기를 요청하다.
- (85) 의장은 운영 규정 및 세칙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면, 안건 심의 및 자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다.
- (86) 박인휘 평의원은 대학평의원회 규정 작성과 변경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고, 기획팀장은 대학평의원회라고 답하다.
- (87) 의장은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는 시범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평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정 및 세칙에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88) 유제욱 평의원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구성단위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규정과 세칙에 대한 개정 및 신설 조항을 구체화하여 작성해 올 것을 요청하고, 다음 회의가 촉박할 경우 이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
- (89) 의장은 다음 번 회의에서 바로 개정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논의를 종료하다.

다. 기타사항

- (1) 간사는 차기 회의가 대학원 편제 조정에 따른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등을 위해 7월 말 개최 예정임을 알리고,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하기로 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5월 25일

의 장 차 미 희

차미희 